

NOROO

2021년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노루홀딩스

## 목차

### I. 개요

###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2. 주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첨부

### 별첨 목록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 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I. 개요

| 기업명 : (주)노루홀딩스

| 작성 담당자 : (정) 방래근 상무보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2191-7778 이메일 [lkbang@noroo.com](mailto:lkbang@noroo.com)

(부) 이대희 과장 윤리경영실

전화번호 02-2191-9625 이메일 [dh.lee@noroo.com](mailto:dh.lee@noroo.com)

| 작성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기업 개요

최대주주 등	한영재 외 8인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44.71%
		소액주주 지분	32.06%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지주사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노루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 매출액	9,552	8,480	8,843
연결 영업이익	267	358	250
연결 계속사업이익	107	291	199
연결 당기순이익	107	291	199
연결 자산총액	10,555	10,511	10,074
별도 자산총액	3,655	3,637	3,585

※ 최대주주 등 및 소액주주 지분율은 21년 12월말 보통주 기준임

##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 아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갖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기업가치의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주주가치제고와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i) 경영투명성 확보

2006년 6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관련법에 따라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기업의 모습을 재편하였으며, 이후 공시규정을 제정하고, 공정공시 및 자율공시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영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구조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운영 기준·절차·책임과 권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시를 통해 이사의 선임배경, 경력, 법령상 결격사유 등과 주요한 활동사항 등을 공개하여 회사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침과 활동내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ii) 견제와 균형

이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영감독기능의 수행을 위해 이사회 인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공정한 경영참여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상근감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및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적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iii)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준법 경영·윤리 경영

당사는 내부에 윤리경영실을 설치하고, 내부 규정 및 규범을 마련하여 준법경영, 윤리경영 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에는 대내외적인 준법 및 법률리스크를 전담하는 전문 기능을 내재화하고 이사회 경영활동과 감사업무를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나. 지배구조 특징

### (i)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과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이사 5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이며, 별도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사와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에 선임되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ii) 이사회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리스크의 제어를 위하여 현재까지는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안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상시 대응가능한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가 당면하는 과제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iii)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 사업에 대한 깊은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인물과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갖춘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전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상법상에 명시된 결격사유 등과 직무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정관과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노루홀딩스 지배구조 홈페이지 :

<https://www.norooholdings.com/company/?pidx=sustainability>

## 2. 주주

###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당사는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소 2주간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간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①-1] 주주총회 개최 내역

구분	2022년 정기주주총회	2021년 정기주주총회	202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03.08	2021.03.11	2020.03.03	
공고일	2022.03.08	2021.03.11	2020.03.03	
주주총회 개최일	2022.03.25 (금)	2021.03.26 (금)	2020.03.20 (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주총회 18일전	주주총회 16일전	주주총회 18일전	
개최장소/지역	본점 / 경기도 안양시	본점 / 경기도 안양시	본점 / 경기도 안양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등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등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여부 및 방법	없음	없음	없음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5명 중 3명 출석	6명 중 4명 출석	7명 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5인 (개인주주 5인) 2)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1) 발언주주: 5인 (개인주주 5인) 2)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1) 발언주주: 4인 (개인주주 4인) 2) 안건에 대한 의견 및 찬성

#### 나.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의 충분성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정관 제15조 4에 근거하여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최소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외국인주주 비율은 약 3.77%로서, 내수 비중이 높은 도로 및 종자산업의 특성상 국내주주가 대부분이므로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 신사업의 확장 등 주요한 사유로 인해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를 영문으로 병기하거나,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안내하는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방법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간접 의결권 행사**

당사는 직접 참여 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필요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주주총회 개최 내역 및 의결권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②-1] 주주총회 개최 일시

구분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제75기 정기주주총회	제74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 2022.03.30 2022.03.31	2021.03.26 2021.03.30 2021.03.31	2020.03.13 2020.03.20 2020.03.26 2020.03.27
정기주주총회일	2022.03.25	2021.03.26	2020.03.20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표 1-②-2]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정기		제75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안건	결의 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sup>1)</sup>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sup>2)</sup>	찬성 주식수(B) <sup>3)</sup>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sup>4)</sup> (비율, %)
제1호 안건	보통	제75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0,232,810	7,322,011	7,320,033 99.97%
						1,978 0.03%
제2호 안건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10,232,810	7,322,011	7,322,011 100.00%
						- 0.00%
제3호 안건	보통	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232,810	7,322,011	687,801 93.84%
						451,210 6.16%
제4호 안건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232,810	7,322,011	6,901,585 94.26%
						420,426 5.74%
제5호 안건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232,810	7,322,011	7,318,158 99.94%
						3,853 0.06%

정기		제76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5		
안건	결의 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sup>1)</sup>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sup>2)</sup>	찬성 주식수(B) <sup>3)</sup>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sup>4)</sup> (비율, %)
제1호 의안	보통	제76기(2021.1.1 ~ 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0,233,135	6,895,003	6,782,890 98.40% 112,113 1.60%
제2호 의안	특별	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233,135	6,895,003	6,712,281 97.30% 182,722 2.70%
제3호 의안	보통	감사 선임의 건	가결	4,597,050	1,421,473	1,258,885 88.60% 162,588 11.40%
제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233,135	6,895,003	6,722,839 97.50% 172,164 2.50%
제5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233,135	6,895,003	6,689,785 97.00% 205,218 3.00%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 나. 주주 참여를 위한 충분한 조치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실시하여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주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는 감사의 선임에 한해서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3개년 평균 당사의 주주총회 참석률은 약 7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주총회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특별한 사유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전반의 사항

#### (i) 주주제안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및 주주제안 의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 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ii) 주주제안 처리 내부기준 및 절차

당사는 상법 제363조 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처리는 IR 담당부서인 재무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전화를 공지하여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 1-③-1]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표 1-③-2]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가. 주주환원정책

#### (i)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당사는 제품 및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주환원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6년 지주회사 전환 이후 15년 연속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당은 당해년도 재무성과, 잉여현금흐름현황, 적정규모의 사내유보금 보유, 경영전략 관점에서의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합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주주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주주환원정책 관련정보 안내의 충분성

당사는 배당에 관련된 내용을 배당 결정에 대한 공시, 사업보고서 공시, 개별 배당금 지급통지서를 통한 우편 안내, 홈페이지 공개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충분히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주주의 유선/이메일 문의에 대해서도 담당자를 통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배당 안내 홈페이지 : <https://www.norooholdings.com/shareholders/?pidx=disclosure>

※ 배당관련 문의 담당자 : 재무관리팀 | Tel. 02-2191-7754 email. [hbkgang@noroo.com](mailto:hbkgang@noroo.com)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현황**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1-⑤-1]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주, 원, 억원, %)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주당배당금	총 배당금 <sup>1)</sup>	시가 배당률 <sup>2)</sup>	배당성향 <sup>3)</sup>	
							연결기준	개별기준
2021	12	보통주	-	450	4,604,910,750	3.62%	294%	84%
		종류주	-	455	84,210,945	1.22%		
2020	12	보통주	-	450	4,604,764,500	4.06%	34%	151%
		종류주	-	455	84,210,945	2.55%		
2019	12	보통주	-	400	4,169,171,395	3.25%	93%	121%
		종류주	-	405	74,956,995	2.03%		

1) 사업연도별 지급액 총액

2)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총액 / 연결 or 개별 당기순이익  
연결배당성향은 지배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함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연간배당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별도의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주의 주주환원 권리 존중**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지주회사 출범 이후 제62기(2007년)부터 제76기(2021년)까지 총 15회 15년간 연속배당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정보**

**(i) 발행가능 주식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

현재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 주식 총수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합하여 1억주(1주당 가격 오백원)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는 13,291,151주(98.63%),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185,250주(1.37%) 입니다.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sup>1)</sup>	발행주식수(주) <sup>2)</sup>	발행비율 <sup>3)</sup>	비고
보통주		100,000,000	13,291,151	13.48%	
종류주	우선주		185,250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상환주식으로서 모두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이 부여된 종류주식이 현재까지 발행한 내역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 또한 없습니다.

**나. 의결권의 공평성**

당사의 모든 보통주는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결권의 공평성이 모든 주주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개최내역**

당사는 주주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재무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소통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주와의 의사소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2-①-2]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2월 24일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	대면 & 비대면	21년 실적 리뷰 신규사업 향후 전망 등
3월 4일			
3월 17일			
5월 20일			
10월 21일			

**(ii)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여부**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IR 담당자: [hbkang@noroo.com](mailto:hbkang@noroo.com) / 02-2191-7754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여부 및 영문공시 내역**

당사 홈페이지는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를 지원하여 외국인의 정보접근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자 정보 및 대표전화도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비중이 높은 사업특성상 외국인 주주 비율이 미미하여(‘21년12월31일 기준 외국인 주주 비율3.77%) 별도의 영문보고서 작성 및 영문공시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2-①-3]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v) 공정공시 내역**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내역은 없습니다.

[표 2-①-4]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내역, 재발방지방안 등**

당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3개년 동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표 2-①-5]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업정보 제공의 적시성, 충분성 및 공평성**

당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따라 기업정보를 적기에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기업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장치**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장치를 갖추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0조 1항 4목에 따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동종 거래의 경우 거래의 종류, 기간, 한도 등을 정하여 연 1회 이사회의 포괄승인을 받고 있으며, 단발성 거래의 경우 이사회 수시 개최를 통하여 거래를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단위: 백만원)

회사명 (채무자)	관계	차입기관	차입목적	채무금액	만기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계열 회사	하나은행	일반대	10,000	2022.03
		신한은행	일반대	6,000	2022.04
		우리은행	일반대	5,000	2022.04
		국민은행	일반대 외 1	4,000	2022.03
합계				25,000	

②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등

(단위: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배당수익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오토코팅 등	2021.01.01 ~ 2021.12.31	15,978
브랜드로열티 수수료 등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오토코팅 등	2021.01.01 ~ 2021.12.31	3,668
임대수익	(주)노루페인트, 농업법인(주)더기반 등	2021.01.01 ~ 2021.12.31	689
유형자산취득	농업법인(주)더기반 등	2021.01.01 ~ 2021.12.31	14,782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포함 최근 5년내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중요한 변경은 없었으며, 향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 시 당사의 이사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필요 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 이사회

####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기능

##### (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중요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등 회사내 주요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의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이사회규정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감사의 보수(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포함함)
- 상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법정준비금의 감액
- 기타 법령이나 정관상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결손의 처분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일정규모 이상의 출연 결정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여부  
(심의·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당사는 법적 의무사항에 기반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의 심의·의결 사항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사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ii) 이사회 권한중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11조 ②항의 사항 이외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다만, 전체 이사수(5명)가 소수인 관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적어 현재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의 효과적인 수행 여부

상기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의결하는 등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는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내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들은 모두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을 두루 거치면서 폭 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회사 임원 등을 수행하며 그룹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경영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변경, 임원 인사 등 상황 발생시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당사 인사지원팀의 주도 하에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수행하고, 신임 대표이사 등이 즉시 경영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므로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는 향후 필요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가. 내부통제 전반에 관한 사항

#### (i) 리스크 관리 정책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안전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조직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

당사는 2016년도부터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적 기준을 전 구성원과 공유하며, 준법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승진자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 및 현장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내부통제 자가리스트 등을 운영하고, 법무 자문프로세스를 통해 전 그룹사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외부 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인 대표 이사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스템화를 마치고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공시책임자인 재무관리부문장의 관리하에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두명의 공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iii) 그 외 내부통제 정책

당사는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및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의지에 따라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보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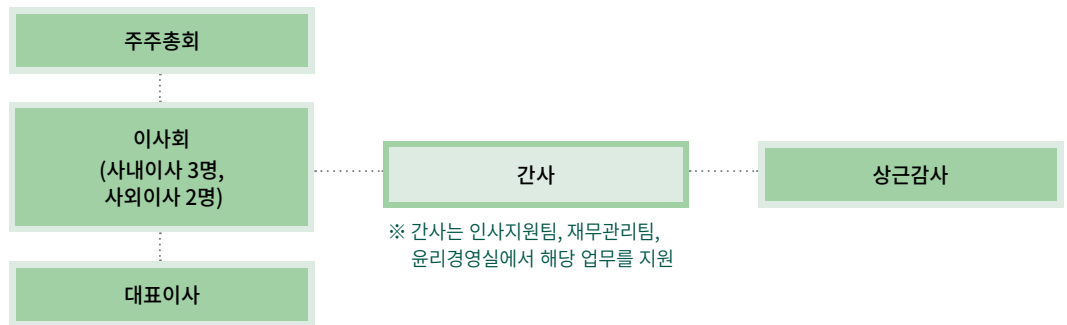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는 정관 제25조 1항에 따라 이사 수 3명 이상 7명 이내,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1/4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한영재, 김용기, 한원석)과 사외이사 2인(권준영, 유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2/5(40%)입니다.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현황**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선임일 <sup>1)</sup>	임기만료 예정일 <sup>2)</sup>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 이사	한영재	남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회장	1983.02.25	2024.03.25	경영 총괄	(미)보스턴대 경영대학원 (주)노루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사내 이사	김용기	남	대표이사 부회장	2016.03.25	2025.03.24	경영 총괄	연세대 경영학과 (주)노루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사내 이사	한원석	남	전무이사	2017.03.24	2023.03.23	경영 부총괄	(미)센테너리대학 경영학과 (주)노루홀딩스 사업전략부문장
사외 이사	권준영	남	-	2019.03.21	2023.03.25	경영 전반	(미)하버드대 도시개발 석사 롯데AMC(주) 대표이사
사외 이사	유은상	남	-	2020.03.20	2024.03.24	경영 전반	(영)런던대 Cass Business School 재무학 석사 YJA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1) 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을 기재함 (최초 선임된 주주총회일로 기재)

2) 회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이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함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

당사는 별도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서 필요시 언제라도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 4-①-3]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ii) 사외이사수, 비율, 연임 현황 등**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2명으로 전체 이사대비 사외이사 비중이 5분의 2(40%)로서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5조 1항에서 규정한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는 기준을 상향하여 충족하고 있습니다.

권준영 사외이사는 2019년 3월 21일 첫 취임(임기 2년)하였으며, 임기만료 후 1번의 재선임(임기 2년)을 통해 현재 사외이사업무를 수행 중이며, 유은상 사외이사는 2020년 3월 20일 첫 취임(임기 2년)하여 임기만료 후 1번의 재선임(임기 2년)을 통해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i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여부 등**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직무 수행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방향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나. 이사회 구성의 효과성·독립성 및 향후 계획 등**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상의 규정 및 당사 정관·이사회 규정 등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사지원팀, 재무관리팀, 윤리경영실이 각 안건별로 이사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상근감사가 이사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i)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구성원별 현황**

당사는 사내 및 사외이사 선출에 있어서 직무상 전문성과 경험, 법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한영재 회장은 그룹 내 최고경영자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을 이끌어 온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화학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생명사업 등의 신사업을 추진, 발전시켜 더 큰 성과를 내는데 중점적 역할과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 대표이사인 김용기 부회장은 그룹 총괄임원으로서 기존 사업관리 및 신규사업 개척 역량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이며, 지주회사 경영진으로서 사업부문의 리스트럭처링 및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자로 회사의 수익기반을 공고히 갖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총괄인 한원석 전무는 그룹 경영전략 구축, 신규사업 모색, 회사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의 신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권준영 사외이사는 투자운용 대표이사이며 자산투자 분야 전문가로서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제고 및 적절한 투자관리를 통한 경영 고도화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은상 사외이사는 투자회사 대표이사이며 투자 및 M&A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경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i)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②-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이사	한영재	1983.02.25	2024.03.25	2021.03.26	재선임	재직
	김용기	2016.03.25	2025.03.24	2022.03.25	재선임	재직
	한원석	2017.03.24	2023.03.23	2020.03.20	재선임	재직
	조용래	2017.03.24	2021.03.26	2021.03.26	사임	퇴직
	김동환	2019.03.21	2021.06.10	2021.06.10	사임	퇴직
사외이사	권준영	2019.03.21	2023.03.25	2021.03.26	재선임	재직
	유은상	2020.03.20	2024.03.24	2022.03.25	재선임	재직
	김연성	2011.03.18	2020.03.20	2020.03.20	임기만료	퇴직

**나. 이사회의 경쟁력 및 향후 계획 등**

당사는 상기 기재된 내용처럼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사내이사와 다양한 경험과 투자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추천위원회 설치, 구성, 활동내역 등**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사전에 이사 후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이사회 관련정보 제공 내역**

[표 4-③-1]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회		정보제공내역
		구분	성명	
2022.03.08 (주총18일전)	2022.03.25	사내	김용기	1. 후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추천인 5. 후보자의 주된 직업 6. 후보자의 세부 경력 7.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8.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9. 후보자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사외	유은상	
2021.03.11 (주총16일전)	2021.03.26	사내	한영재	
		사내	김동환	
		사외	권준영	

**(ii) 재선임되는 이사후보에 대한 활동내역 여부 등**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에 대한 출석률, 의안별 찬성·반대 여부 등 활동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여부 등**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향후 관련 법규 및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집중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당사는 관련법규와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주주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 자산 총액이 2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현재까지는 별도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성이 증가될 경우 설립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한영재	남	대표이사 회장	등기	상근	경영 총괄
김용기	남	대표이사 부회장	등기	상근	경영 총괄
한원석	남	전무이사	등기	상근	경영 부총괄
권준영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유은상	남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노항덕	남	부사장	미등기	상근	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
신규순	남	상무	미등기	상근	바이오융합연구소 연구개발
방래근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재무관리담당
손종우	남	감사	등기	상근	감사

**나.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등**

당사는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선임시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후보자의 성과, 역량, 리더십, 평판 등 임원으로서의 기본자격과 함께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자격요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여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다.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 확정 판결 또는 유혐의자의 임원 선임 유무**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당사는 대내외 경영환경 및 조직규모를 고려하여 하나의 주체가 의사결정, 집행, 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의 당사와의 이해관계 현황**

**(i) 사외이사의 과거 당사(계열기업 포함) 재직여부**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거래실적이 높은 법인에서 근무한 자, 일정규모 이상으로 당사와의 자본 거래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당사에 출자한 법인에서 근무하는 자,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자, 당사의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표 5-①-1]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 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권준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은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ii) 상기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내부규정**

사외이사의 이해관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인사지원팀 및 윤리경영실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히 확인을 위한 내부규정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장기재직 유무**

당사는 정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34조 ⑤의 7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서 6년,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 한 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①-2]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재직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재직시 그 사유
권준영	3년2개월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유은상	2년2개월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다. 사외이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상충 방지 등**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인사지원팀과 윤리경영실에서 후보자 본인의 역량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이 정하는 부적격 요건 및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친 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는 현재 당사와 어떤 중대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의 발생유무를 검토하며,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이사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 수행 현황**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관련 내부 기준**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0조 ①의 4에 따라 이사회 승인 없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타회사의 임원겸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ii)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②-1]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권준영	2019.03.21	2023.03.25	롯데 AMC(주) 대표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은상	2020.03.20	2024.03.24	YJA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사외이사의 충분한 직무수행 여부**

당사의 권준영 사외이사와 유은상 사내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간 개최된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주요한 14건의 의결 사안에 13회 참석(93%)하는 등 높은 비율로 중요 경영 현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개진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한다.

### 가. 사외이사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 (i)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 관련 절차 및 현황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3조 ②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회 부의사안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해당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관련자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안건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ii) 사외이사 지원 전담부서 지정여부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의해 간사를 두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사는 인사지원팀과 재무관리팀의 팀장이 맡아서 사외이사가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iii) 별도 사외이사만의 회의개최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인원이 소수(2명)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추가 선임 등 회의 개최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표 5-③-1]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나. 사외이사 대상 정보, 자원 제공의 충분성

당사는 상기 정책 및 운영현황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당사는 정관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에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보고서 내에 각 이사별 이사회 참석 현황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외이사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사회 참여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책

##### (i) 보수 관련 정책의 내용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7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수량, 행사 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7조 3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사외이사 보수의 적정성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이사회 활동 결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현황 전반**

당사는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 관련 구체적인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6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이사회규정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규정 제8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이사회규정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 등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7-①-1]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안건통지일자 등

① 2021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경영	경영성과급지급의 건 외 1건	가결	임시	2021.01.20	2021.01.13	4명/7명
2	재무	(주)더기반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임시	2021.01.25	2021.01.18	4명/7명
3	재무	(주)더기반 안성 부지 매입의 건	가결	임시	2021.01.26	2021.01.19	6명/7명
4	재무	(주)두꺼비선생 출자의 건	가결	임시	2021.02.18	2021.02.11	6명/7명
5	재무	자사주특정금전신탁(2건) 계약기간 연장의 건	가결	임시	2021.02.22	2021.02.15	6명/7명
6	재무	(주)더기반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연장의 건 외 3건	가결	임시	2021.03.08	2021.02.26	4명/7명
7	주주총회	제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정기	2021.03.11	2021.03.03	6명/7명
8	경영	임원보수결정의 건	가결	임시	2021.03.26	2021.03.19	4명/6명
9	재무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 차입 외 2건	가결	임시	2021.05.17	2021.05.10	5명/6명
10	재무	산업은행 일반운전자금 대출 외 1건	가결	임시	2021.06.28	2021.06.21	5명/5명
11	재무	우리은행 당좌대출 계약기간 연장 외 1건	가결	임시	2021.09.06	2021.08.31	5명/5명
12	경영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가결	임시	2021.09.06	2021.08.31	5명/5명
13	재무	자사주특정금전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가결	임시	2021.10.21	2021.10.14	5명/5명
14	재무	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만기연장 외 1건	가결	임시	2021.11.29	2021.11.22	5명/5명

② 2022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	경영	경영성과급지급의 건	가결	임시	2022.01.10	2022.01.03	5명/5명
2	재무	신한은행 역외 대출 연장 외 2건	가결	임시	2022.01.24	2022.01.17	5명/5명
3	재무	자사주특정금전신탁(2건) 계약기간 연장 외 2건	가결	임시	2022.02.21	2022.02.14	4명/5명
4	경영	전자투표제 도입의 건	가결	임시	2022.02.21	2022.02.14	5명/5명
5	재무	(주)더기반 하나은행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제공 외 2건	가결	임시	2022.03.07	2022.02.28	5명/5명
6	주주총회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정기	2022.03.08	2022.02.28	5명/5명
7	경영	임원보수결정 외 1건	가결	임시	2022.03.25	2022.03.18	5명/5명
8	재무	TOSCANA 펀드 투자 외 1건	가결	임시	2022.04.04	2022.03.28	5명/5명
9	재무	(주)더기반 신한은행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제공 외 2건	가결	임시	2022.04.18	2022.04.11	5명/5명
10	재무	국민은행 당좌대출 계약기간 연장 외 1건	가결	정기	2022.05.16	2022.05.09	5명/5명

상기 표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임시 이사회가 규정된 기간내 또는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녹취록 작성·보존 등 관리여부**

당사는 상법 제391조3 및 당사 정관 제34조,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녹취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관리팀에서 의사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작성된 의사록은 영구 보관 문서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록을 스캔 후 별도 관리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규정 제15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나.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찬성율 등 현황**

각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재직 한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① 2021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비고
	개회일자	01.20	01.25	01.26	02.18	02.22	03.08	03.11	03.26	05.17	06.28	09.06	09.06	10.21	11.29	
사내	한영재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용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원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조용래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불참									7차 사임
	김동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차 사임
사외	권준영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유은상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② 2022년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비고
	개최일자	01.10	01.24	02.21	02.21	03.07	03.08	03.25	04.04	04.18	05.16	
사내	한영재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용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한원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사외	권준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유은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표 7-②-2] 최근 3개년도 재직 개별 이사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2021	2020	2019	최근 3개년 평균	2021	2020	2019
한영재	사내	1983.02.25~현재	78	86	70	81	100	100	100	100
김용기	사내	2016.03.25~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원석	사내	2017.03.24~현재	71	86	65	67	100	100	100	100
조용래	사내	2017.03.24~2021.03.26	100	-	100	100	100	-	100	100
김동환	사내	2019.03.21~2021.06.10	96	89	100	94	100	100	100	100
권준영	사외	2019.03.21~현재	82	93	87	67	100	100	100	100
유은상	사외	2020.03.20~현재	97	93	100	-	100	100	100	-
김연성	사외	2011.03.18~2020.03.20	76	-	-	76	100	-	-	100

※ 주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위원회의 과반수 사외이사 구성 여부 등**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위원회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별도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거나, 이사회 내 위원회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명문화

당사는 상기항목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이사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나.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여부, 위원회별 활동 내역 등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 및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표 8-②-1]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4. 감사기구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

#### (i) 구성 및 선임현황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서 상법 제542조의 10에 근거한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감사	상근감사	손종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G 유플러스 경영기획담당 (現) (주)노루홀딩스 상근감사	2019.03.21 정기주주총회 신규선임

#### (ii) 내부감사기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상법 제411조에 따라 당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그룹의 감사업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 감사활동을 저해할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감사의 선임절차 및 활동에 관련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감사 팀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범위의 업무와 중요서류에 대해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일상감사 및 주요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로 구분됩니다. 감사직무 수행 시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 ① 제장부, 증빙서 및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청
- ② 관계자의 답변요청
- ③ 회계관계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제출요청
- ④ 감사결과 부당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계직원의 문책건의
- ⑤ 관계부서에 조언, 권고
- ⑥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 ⑦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나. 내부감사기구 운영 관련 사항**

**(i) 내부감사기구 규정**

당사는 회사규모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총 6장 33조로 이루어진 내부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규정의 1조는 목적, 4조는 감사의 직무, 5조는 감사의 권한, 6조는 감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11조에서는 감사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감사부설기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ii) 감사업무 교육 제공현황**

당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회계, 산업안전, 규제동향 등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 업무수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안 당사의 감사가 참가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1-02-02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온라인설명회
2021-04-02		회계감사의 수행과 Fraud 예방실무
2021-08-24		상장회사 ESG 정보공개제도 설명회
2021-10-06		ESG경영현황 및 규제동향 설명회
2021-02-03	울촌	ESG : 글로벌 기업 대응사례 및 법적쟁점
2021-03-0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심화 세미나
2021-10-27		2050탄소중립과 2030NDC달성을 위한 ESG전략웨비나
2021-11-3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
2021-07-22	삼정KPMG	삼정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 : 동영상드라마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동사례연구
2021-08-09	내부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실무 운영

**(iii) 경영진 부정행위 조사관련 절차 및 정보·비용 지원 관련 사항**

당사의 정관 제30조 2의 2항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가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제32조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2조 ②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10조 ③항과 ④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v) 지원조직 설치현황**

윤리경영실에서는 상임감사를 지원하며 준법지원 및 내부통제관련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거나, 내부 유관부서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요원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v)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 감사규정 제5조의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감사는 감사업무수행을 위해 회사의 각종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임감사는 회사의 주요 회의체인 사장단 회의에 매월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매주 업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 들을 상시적으로 공유 받고 있습니다.

**다. 감사 보수의 적정성****(i) 보수정책 운영 현황 등**

당사는 사내 임원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상승률 및 재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 금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여 투명하게 공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 여부**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으며, 상법 제542조의 10항에 따라 상근감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규모를 고려시, 현재의 상근감사 운영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회사 규모의 확대 및 경영환경상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상기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당사는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력 및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 활동내역**

**(i) 내부감사기구 활동 등**

감사는 이사회에 부의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내용과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인 재무제표 검토결과,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 내부통제운영실태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구분	내용	가결여부	개최일자
2	결의사항	(주)더기반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2021.01.25
3	결의사항	(주)더기반 안성 부지 매입의 건	가결	2021.01.26
4	결의사항	(주)두꺼비선생 출자의 건	가결	2021.02.18
5	결의사항	자사주특정금전신탁(2건) 계약기간 연장의 건	가결	2021.02.22
6	결의사항	(주)더기반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연장의 건 외 3건	가결	2021.03.08
7	결의사항	제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2021.03.11
9	결의사항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 차입 외 2건	가결	2021.05.17
10	결의사항	산업은행 일반운전자금 대출 외 1건	가결	2021.06.28
11	결의사항	우리은행 당좌대출 계약기간 연장 외 1건	가결	2021.09.06
12	결의사항	기업지배구조현장 제정의 건	가결	2021.09.06
13	결의사항	자사주특정금전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가결	2021.10.21
14	결의사항	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만기연장 외 1건	가결	2021.11.29

[내부 감사 활동]

감사기간	형태	대상	내용	보고대상
2021.05.24 ~ 2021.06.28	특별감사	더기반	본사 및 지역사업장 사업현황 점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2021.03.11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보고서	이사회
2021.03.11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이사회
2021.03.18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대표이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2021.03.26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주주총회
2022.03.08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보고서	이사회
2022.03.08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이사회
2022.03.17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대표이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2022.03.25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주주총회

[표 9-②-1]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i)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 기록 및 보존, 주총 보고절차 등과 관련된 내부규정

당사는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6조 및 감사규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감사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제26조 주요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에의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들을 근거로,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관련 기준·절차**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법령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는 감사계약기간의 만료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재선임하였으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내용을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한영회계법인과 감사 진행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정회계법인과 2022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ii) 외부감사 선임위원회 설치현황**

당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제13조 5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당사의 상근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기관투자자 1인, 외부 최대출자자 1인, 채권 금융기관 1인 등 총 6인으로 구성하여 이중 2/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선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는 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감사품질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ii)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회의 현황

일자	참석인원	논의내용	비고
2021.02.04	감사인 선임위원 6명중 5명	- (주)노루홀딩스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외부감사인 승인(한영회계법인)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 감사 수행에 대한 평가 등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이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즉시 피드백이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인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차기 감사인 외부선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차기 감사인 선임 시 검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v)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현황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은 없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법률에 따라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자회사와는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해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i) 경영진 참석 없는 회의 개최 및 주요 협의 사항**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내부통제 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중요한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이외에도 감사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 등이 협의되며,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 부정 또는 위법 사항이 감사에게 보고되어 내부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내용
2021년 04월 29일	회사측: 감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서면회의(주1)	유의적인 위험 및 감사계획, 핵심감사제, 감사인의 독립성 등
2022년 03월 14일	회사측: 감사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서면회의(주1)	외부감사 수행결과 등

※ 주1) 코로나19로 인해 이메일을 통한 서면 보고로 진행

**(ii) 주요협의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 반영 절차**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내 유관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iii) 외부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 통보 절차 및 내부감사기구 역할 및 책임 등**

당사의 감사규정 제13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활동 중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회계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이 사실을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v)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전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2년 1월 25일(정기주주총회 6주전),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2년 2월 14일(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번	구분	외부감사인	제출시기	비고
1	감사전 재무제표	2022년 1월 25일	2022년 1월 25일	정기주주총회(2022.03.25.) 6주전 제출 준수
2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	2022년 2월 14일	2022년 2월 14일	정기주주총회(2022.03.25.) 4주전 제출 준수

나.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경영진 참석 없는 충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구분	핵심지표	준수여부		준수 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제7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18일전에 소집공고함
	② 전자투표 실시*	o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미참여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배당 기준/형태/시기는 사업보고서, 홈페이지에 공개함. 배당실시 계획은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음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x	구체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수립 (인사팀 의견 필요)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체계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x	핵심 사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함
	⑧ 집중투표제 채택		x	정관 제26조 2항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배제함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임원선임단계에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정책 없음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o		6년을 초과하는 장기 재직 사외이사 없음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o		감사는 사외 9회, 사내 1회 교육 받음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는 없으나, 윤리경영실에서 감사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있음.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 요건 미 충족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o		정관 및 내부감사 규정에 따라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올해 최초 지배구조보고서 작성으로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만 표기하고 직전 공시대상기간 준수여부는 표기하지 않음

**별첨 목록**

1. 정관
2. 윤리규범
3. 이사회운영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공시정보관리규정
6. 감사규정

